

해뜨는마을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내부관리 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치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해뜨는마을에 설치·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해뜨는마을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자
 - 가. 책임자: 시설장 박혜경
 -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전경순(정), 사회복지사 오현정(부), 관리인(부), 위탁업체 (주)진돗개 보안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해뜨는마을 CCTV 설치·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은 CCTV는 총 47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다음과 같다.

설치 위치	개수	설치 위치	개수
침실	19	물리치료실	1
프로그램	1	2층 공동공간(홀,복도 등)	3
면회실	1	외부	7
특별침실	1	휠체어리프트/엘리베이터	2
공동공간(홀,복도 등)	5	식당	1
지하 복도	1	주방	1
전실(주 출입구)	2	성당 앞	1
마음자리	1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대문, 후문, 별관측 출입문, 중앙출입문, 성당측 출입문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호의 CCTV 운영 장비는 해뜨는마을 1층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해뜨는마을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HD 400만화소
2. CCTV 촬영: 일과중 촬영
3. CCTV 정보 보유기간: 60일
4. CCTV 저장: 400만화소(1920*1280픽셀), 초당 10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1층 사무실에 있는 N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1층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60일 경과 시 자동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운영자는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mm-in)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 및 기관은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의 명칭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정정(삭제) 조치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서면(정보통신망 포함)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대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제2장의 제5조(책임자 지정)에 정하는 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내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 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 장비에 대해 CCTV 운영관리기록부에 따라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2022)」, 「개인정보보호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동의서

-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 연락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별지 제 3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서

	성 명		전화번호	
신고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 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 -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20 . . 까지		
	동의자 현황	- 수급자 수: 명 - 동의자 수: 명 • 수급자 수: 명 • 보호자 수: 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 받았기에 붙임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별지 제 4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필증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 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 -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 20 . . . 까지		
	동의자 현황	- 수급자 수: 명 - 동의자 수: 명 • 수급자 수: 명 • 보호자 수: 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장기요양기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장소]

- ☒ 침실 ☒ 공동거실(복도포함) ☒ 현관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 엘리베이터 ☒ 기타(면회실,마음자리,외부 등)

-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 보호자 대상]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종사자 대상]

성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서명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해뜨는마을(14159000007)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종사자) 연락처:

사회복지법인 영보사회복지회 해뜨는마을 귀하

[별지 제 6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예: 연도, 월, 일, 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장기요양기관 내 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_____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영보사회복지회 해뜨는마을 귀하						

[별지 제 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제한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	열람 장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 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영보사회복지회 해뜨는마을

[별지 제 8호 서식]

정 정 · 삭 제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 적 사 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 일 명 칭		열 람 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영보사회복지회 해뜨는마을 귀하						

[별지 제 9호 서식]

번 호		정 정 (삭 제)조 치 결 과 통 지 서			
제 호					
① 수 신	_____ 귀하 (주소 : _____)				
② 개 인 정 보 파 일 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 정 (삭 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영보사회복지회 해뜨는마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 · 열람 · 제공)

번호	구분	이용일자	요청자 (성명, 연락처)	파일명/형태/내용	이용목적 / 사유	이용 시간	이용 장소
1	☐ 이용 ☐ 제공 ☐ 열람						
2	☐ 이용 ☐ 제공 ☐ 열람						
3	☐ 이용 ☐ 제공 ☐ 열람						
4	☐ 이용 ☐ 제공 ☐ 열람						
5	☐ 이용 ☐ 제공 ☐ 열람						

작성요령

○ 구분: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 열람: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일시: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23. 6. 30. 15:00 등).

○ 요청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123-4567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별지 제 11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 · 파기 관리대장

[illegible]

[별지 제 11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 · 파기 관리대장

[illegible]

C C T V 설 치 안 내 [예시]	
목 적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 영 범 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책 임 자	책임자 : _____ 대표자(시설장) [연락처] 02- 운영자 : _____ 사무국장 [연락처] 위탁업체 : 업체명 [연락처]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사회복지법인 영보사회복지회 해뜨는마을 귀하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장기요양기관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본인 이외의 다른 수급자나 제3자에게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 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사회복지법인 영보사회복지회 해뜨는마을 귀하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운영 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기본 점검사항: 최초 설치 및 매년 초

구 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 Y	☐ N
1	저장장치는 130만 화소 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갖추고, 24시간 지속적으로 촬영(녹화) 되도록 설치되어 있는가?	☐	☐
2	필수 설치구역에 카메라가 1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 각 공동거실(침실과 연결되는 복도 포함), 침실, 현관(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로),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	☐	☐
3	카메라는 실내가구 또는 건축물 구조상 촬영범위가 축소되지 않게 설치되어 있는가?	☐	☐
4	장기요양기관의 안전관리와 보안 등을 위해 추가 설치 필요한 곳이 있는가?	☐	☐
5	CCTV 안내판은 기재 사항이 모두 작성되고, 출입구와 주변 경계부(담장)에 설치되어 있는가?	☐	☐
6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와 그 보호자 및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는가?	☐	☐
7	모니터는 접근권한이 있는 지정된 종사자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가?	☐	☐
8	저장장치는 별도의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시설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	☐
9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에 부팅암호와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고,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	☐
10	침실 촬영을 위해 사전에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토록 했는가?	☐	☐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운영 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주 1회 점검: ()년 ()월

[illegible]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운영 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월 1회 점검: ()년 ()월

점검 항목		점검결과		점검 일자	조치사항	확인 항목
		적합	부적합			
① 설치 및 관리						
1	저장장치는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고 있는가?	☐	☐			4-1
2	130만 화소 이상의 카메라로 화면 속 인물의 행동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는가?	☐	☐			1-1
3	카메라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있는가?	☐	☐			1-1
4	카메라는 필수 설치구역에 1대 이상 설치되어 있는가?	☐	☐			1-2
5	카메라는 실내가구 또는 건축물 구조상 촬영 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설치되었는가?	☐	☐			1-2
6	CCTV 안내판은 주 출입구와 주변 경계부(담장)에 설치되어 있는가?	☐	☐			1-3
7	CCTV 안내판의 기재 사항은 현재 해당기관의 CCTV 설치·운영상황과 동일한가?	☐	☐			1-3
② 안전성 확보 조치						
1	모니터는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운영담당자 등 지정된 자에 한해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는가?	☐	☐			2-3
2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별도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			2-3
3	저장장치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잠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	☐			2-3
4	영상정보 관리 컴퓨터에 부팅암호 및 로그인 암호를 설정하고, 로그인 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였는가?	☐	☐			2-3

점검 항목		점검결과		점검 일자	조치사항	확인 항목
		적합	부적합			
5	영상정보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로만 제한하고 그 외에는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	☐	☐			2-3
③ 운영 및 관리기준						
1	내부 관리계획에 책임자 지정, 카메라 대수, 위치, 성능, 촬영시간 및 보관기간 등의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가?	☐	☐			2-1 2-2
2	내부 관리계획의 기재 내용과 현재 설치·운영 사항은 동일한가?	☐	☐			2-2 2-4
3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부 관리계획(CCTV 설치현황 등)'이 실제 설치·운영 현황과 동일하게 공시되고 있는가?	☐	☐			1-4
4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상정보는 최소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 이상 삭제하고 있는가?	☐	☐			4-2
5	수급자 및 그 보호자가 열람 요청 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열람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열람하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	☐			3-1 3-2 3-3 3-4
6	열람요청서, 결정통지서,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문서를 비치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	☐			3-1 3-3
7	외부 전문기관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 교육 및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관리하고 있는가?	☐	☐			2-5

CCTV 열람 요청에 필요한 자료백업 요청서

CCTV 열람 요청에 따라 열람 결정을 한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해야 함에 따라, 정보주체의 **정보보호를 위한 작업을 위해** 열람범위 부분을 **CCTV 열람 전용 이동식 디스크로 백업**하고자 하오니 이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자	직위		이름	
	영상자료 정보			

■ 백업 목적

○ CCTV 영상 백업 및 보관(열람일까지)

○ 백업자료 내 정보주체의 적절한 정보보호 처리 여부 확인 및 점검

■ 백업 영상 폐기(예정) 계획

○ . . . : 영상정보 열람 요청인 열람 후, 즉시 파기 및 초기화

○ 열람일시 변동에 따라 파기 시점 변동 가능

. . .

사회복지법인 영보사회복지회 해뜨는마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열람 확인서

청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열람 내용	열람 영상 시간	(예: 연도,월,일,시간 정확히 기록)		
	열람 영상 설치 장소	(예: 장기요양기관 내 장소 기입)		
	열람 요청 목적 및 내용			

위에 기록된 사항이 담긴 영상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름
아이디
성별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사회복지법인 영보사회복지회 해뜨는마을 귀하